

‘석면노출기준 20배 강화’의 의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남원



최근 석면의 노출기준을 현행 2개/cc(백석면에 대하여)에서 0.1개/cc(모든 석면에 대하여)로 내리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다. 때가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석면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100% 수입하고 있고, 카나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다음으로 남아프리카, 그리스, 러시아연방, 짐바브웨 등에서 소량씩 수입하고 있다. 2000년도 우리나라의 석면 수입량은 약 3만톤(미화로 약 900만불에 해당)이었다.

석면은 유리면이나 암면 같은 인공섬유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물섬유로서 백석면(chrysotile), 청석면(crocidolite) 및 갈석면(amosite) 등 3종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백석면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석면은 내화성이 강하여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단열재
- 화재방지용 물질(살포)
- 자동차 브레이크(마찰용)
- 흡음물질
- 천, 끈
- 바닥이나 지붕 타일
- 천정 석고보드

1. 석면의 유해성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폐(asbestosis), 중피종(mesothelioma) 및 폐암 등을 유발하며,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흡연하면 폐암발생율은

상승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혀졌다. 석면 노출량과 석면폐의 발생 사이에는 양-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가 성립되어 노출량이 많을수록 석면폐의 발생율은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으나, 석면 노출량과 암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석면노출은 가능한 한 최소로 줄여야 한다.

2. 미국 OSHA 기준의 변천과정

미국 노동성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은 석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석면에 대하여 0.1개/cc이며,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과거 30여년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71 - 12개/cc (TWA)

1971년 5월 OSHA는 석면에 대한 기준을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TWA, Time-Weighted Average)로서 12개/cc로 정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의 요구로 1971년 12월 긴급 임시기준(ETS, Emergency Temporary Standard)을 설정하여 8시간 TWA 5개/cc와 Peak 10개/cc로 하였다.

2) 1972 - 5개/cc (TWA), 10개/cc (Ceiling)

1972년 OSHA는 8시간 TWA 5개/cc와 Ceiling 10개/cc를 최종 노출기준으로 확정하였다.

였다. 이 기준이면 석면폐를 예방할 수 있고 판단하였으며 암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3) 1976 - 2 개/cc (TWA)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76년 OSHA는 기준을 8시간 TWA 2개/cc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 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많은 자료가 발표됨에 따라 1975년 OSHA에서는 기준을 TWA 0.5 개/cc와 Ceiling 5개/cc로 정하려고 공고까지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4) 1986 - 0.2개/cc (TWA)

5) 1988 - 1개/cc (Ceiling)

1986년 OSHA에서는 기준을 8시간 TWA 0.2개/cc로 하였다. 이때 OSHA는 석면기준을 2개/cc에서 0.2개/cc로 내릴 경우 평생동안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1000명당 64명에서 6.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노동조합은 이 기준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 재판 등 여러 과정을 거쳐 1988년 OSHA는 ceiling농도 1 개/cc를 추가하였다.

6) 1994 - 0.1개/cc (TWA), 1개/cc (30분 평균, Excursion Limit)

1994년 OSHA는 농도기준을 TWA 0.2개/cc에서 0.1개/cc로 내리면서 “건강 위해성을 유의하게 감소하기 위하여”라고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농도기준 이외에 작업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제정하면서 배경, 공개토론, 인용논문, 기타 자료 등 총 55,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OSHA는 보관하고 있다.

OSHA는 석면노출기준을 0.2개/cc에서 0.1개/cc로 내릴 경우, 20년간 노출된 근로자의 암 발생율은 1000명당 4.5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한다고 추정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암 발생율이 감소는 하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0.1개/cc 농도기준은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OSHA에서는 농도기준 이외에 작업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매우 상세하게 작업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석면 농도를 0.1개/cc 미만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이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사업장에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학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 기준(0.1개/cc)을 지킬 수 있다고 OSHA는 판단하였다.

3. 우리나라의 기준

현행 우리나라의 석면노출기준은 약 15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석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고시 제 97-65호).

- 백석면 (Chrysotile) 2개/cm³
- 갈석면 (Amosite) 0.5개/cm³
- 청석면 (Crocidolite) 0.2개/cm³

- 기타 형태 2개/cm³
(이상의 기준은 길이 5μm 이상인 모든 섬유의 농도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석면 노출기준은 25년 전(1976년)에 설정되었던 미국 OSHA기준과 같다. 청석면과 갈석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95% 이상이 백석면이므로 백석면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미국 OSHA기준에는 노출기준 이외에도 작업방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준에는 작업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기를 건의한다.

4. 석면관리대책

석면은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건물내의 석면포함물질을 제거하거나 보수 작업할 때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발생한다. 또한 석면은 단열재로 많이 쓰이므로 단열재를 제거할 때에도 발생한다. Brake-lining 제조, 석면방직, 조선업 및 슬레이트 제조업 등 산업장에서도 쓰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물 내 작업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석면관리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단계: 건물 내 석면포함여부 조사
석면 bulk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석면포함여부를 확인하며, 보통 편광현미경을 이용하

며 분석한다(그림 1 참조). 만약 건물 내에 석면포함물질이 존재하면 엄격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2) 2단계: 관리방법

빌딩관리 부서에 석면을 관리하는 인력을 선정한다. 이 사람은 건물 내 보수작업이 있을 때 마다 철저히 감독한다.

3) 3 단계: 작업방법

- 작업장의 바닥, 벽, 각종 기계 등을 vinyl sheet로 덮어 오염을 방지한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그림 2 참조).
-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한다(그림 3 참조).
- 작업장 내에는 고성능여과재(HEPA)를 이용하여 음압을 형성하고, smoke tester를 이용하여 음압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한다. 이는 석면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모든 작업에는 습식법을 적용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 작업장 안과 밖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계속하여 측정한다. 만약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찾아 개선한다.
- HEPA를 이용한 진공청소



그림 1. 현미경을 이용한 석면 분석



그림 2. 석면작업 전 vinyl sheet로 작업장을 덮는 장면



그림 3. 석면작업자의 보호구를 착용한 석면 작업자